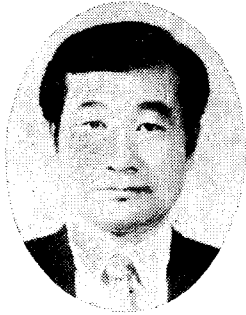


〈技術解説〉



## 西歐의 建設工事紛爭處理와 運用에 關하여 (2)

成均館大工大招聘講師 金 洵 根\*

### — 目 次 —

- 7. 國際商業會議所의 仲裁規則概要
- 8. 先進國의 建設工事中裁制度
  - 8.1. 美國篇
  - 8.2. 英國篇
  - 8.3. 西獨篇
- 9. 맺 는 말
- 10. 參考文獻 및 資料目錄

### 7. 國際商業會議所의 仲裁規則概要

國際商業會議所(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는 유엔西歐經濟委員會(UNEC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의 各種標準契約 約款과 FIDIC(國際건설링 엔지니어聯合會: 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Ingenieurs Conseils)의 標準約款이 指定하는 唯一한 仲裁機關으로서 여러갈래로 存立하고 있는 國際仲裁機關속에서 ICC의 調停運營委員會(Administrative Commission for Conciliation)와 仲裁裁判所(Court of Arbitration)는 國際間的 商事紛爭解決에 가장 널리 應用되고 있다. 1923年, 巴리에 常設되어 유엔에서 A級諮問機關으로서 最高의 資格이 附與되어 53個國(1978年 現在)에 國內委員會가 設置되어 있다. ※1966. 10. 13. 大法院承認된 商事仲裁規則이 있고, 韓國商事仲裁院이 이 일을 맡고 있다.

FIDIC에서는 紛爭解決의 條項으로서 仲裁를 ICC에 依한 機關仲裁를 할 것을 定해놓고 있다 今後의 國際建設工事契約에서는 FIDIC의 約款

을 適用할 可能性은 增加傾向에 있고, 必然的으로 ICC와의 關係는 漸次 強化될 것으로 展望된다. 여기서 ICC의 仲裁規則을 概略적으로 說明하게 되나, ICC가 勸獎하는 標準仲裁條項은 다음과 같고, ICC仲裁의 基本條項으로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All disputes arising in connection with the present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under the rules of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by one or more arbitrators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said rules.” “本契約에 關聯되어 發生하는 모든 紛爭事項은 國際商業會議所(I.C.C.)의 調停과 仲裁에 關한 規則에 따르고, 이 規則에 따라서 選定된 1人或은 2人以上의 仲裁人에 따라 最終結論으로서 解決되는 것으로 한다.”

#### 7.1. 仲裁 裁判所의 性格

ICC內에는 獨立된 機構로서 仲裁裁判所가 設定되어 있고, 國際性を 높이 가진 商事仲裁(Business disputes)를 仲裁에 依해서 解決하는

\* 土木技術士(港灣 및 海岸)

任務를 띠고 있다. (1955年 6월부터 “調停 및 仲裁規則”을 發效케 하였고, 全文 31條와 附則으로 構成되어 있다.) 裁判所라는 이름에 混同해서는 안되며 司法三審制度上的 法廷이라는 性格과는 매우 稀薄하다는 것이다. 仲裁裁判所는 自己 스스로 紛爭解決을 하는 곳이 아니고, 各其의 紛爭解決에는 紛爭當事者가 別途로 確定되지 않는 限 仲裁人의 選定이나, 仲裁人選定の 確認을 하고, 仲裁의 仲介를 하는데 그친다는 것이다. (第 6條와 第 7條)

## 7.2. ICC의 調停節次

調停은 ICC에 設置된 調停管理委員會(Administrative Committee for Conciliation 이하 管理委員會라 함)가 行政事務를 담당하고 있다. 管理委員會 委員은 各國 國內委員會가 파리에 거주하는 自國國民중에서 1人내지 3人을 指名하여 이를 ICC의 會長이 委員으로 任命하게 된다. 委員의 任期는 2年이다.

紛爭은 3人의 委員으로 構成되는 調停委員會(Conciliation Committee 이하 委員會라 함)에 회부되는데 이들 委員은 申請人 및 被申請人과 각각 같은 國籍人 中에서 2人, 그리고 兩當事者와 다른 國籍人으로 1人을 管理委員會에서 選定한다(調停規則 第 1條).

調停을 申請하려면 申請人은 自國의 國內委員會를 經유하거나 또는 直接 ICC本部에 申請하여야 한다. ICC의 事務總長은 申請書와 關係文書, 證憑書類, 豫納金을 領受하면 直接 또는 相對方의 國內委員會를 通하여 紛爭相對方에게 그 趣旨를 通報하고 相對方에게 調停을 受諾하도록 勸하며 主張陳述書, 關係文書 및 證憑書類寫本 그리고 調停節次中 國際本部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調停委員會에 豫納하여야 한다. 委員會는 當事者들을 直接 또는 소속 國內委員會를 通하여 間接적으로 審問하여야 한다. 紛爭解決을 爲하여 調停委員會에 參加한 사람은 同一한 紛爭에 對하여 仲裁人으로 任命될 수 없다(第 5條 2項)

## 7.3. 仲裁裁判所の 仲裁節次

仲裁裁判所는 ICC의 調停 및 仲裁規則(以下 規則이라 함)에 따라 國際商事紛爭을 仲裁로써 解

決하도록 하는 手段을 提供하며 裁判自體가 仲裁를 하지 않는다. 즉, 規則을 選擇한 當事者들에게 規則에 수반되는 제한 절차상의 行政的 補助를 하는 것이다. 仲裁裁判所는 判定部(tribunal)가 아니며 ICC의 附設獨立機關으로 다만 仲裁節次를 관리하는 任務를 지니고 있다. 規則에 따라 仲裁節次를 進行하고 判定을 하는 것은 仲裁人으로 構成되는 判定部이다. 따라서 當事者들이 달리 約定하지 않은 한은 이 規則의 規定에 따라서 仲裁節次가 進行된다.

ICC 調停 및 仲裁規則은 1975年 6月 1日字로 改正施行되고 있다. 이 規則에 따른 節次의 重要點을 살펴보고자 한다.

### 7.3.1. 仲裁의 申請

ICC에 仲裁를 申請하는 當事者는 自國의 國內委員會를 通하거나 直接 裁判所의 事務局에 仲裁申請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事務局은 申請書 및 부속 書類들의 사본을 被申請人에게 送付하여 그가 答辯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第 3條).

이러한 書類를 받은 被申請人은 받은 후 30日 以內에 仲裁人의 選定에 關한 申請人의 提案에 論評하고 適當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自身의 指名權을 行使하여야 한다.

### 7.3.2. 仲裁人의 選定

仲裁裁判所는 仲裁人을 任命하기도 하고 또는 當事者가 指名한 仲裁人을 確認하기도 한다. 이를 確認함에 있어서는 指名된 仲裁人의 國籍, 居處 및 當事者 또는 다른 仲裁人의 國籍이 되는 國家와의 關係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裁判所의 判定部는 1人 또는 3人의 仲裁人으로 構成된다.

當事者가 單獨仲裁人에 依하여 紛爭을 解決하기로 合意한 경우에는 當事者가 合意하여 單獨仲裁人을 指名한 後 裁判所의 確認을 받는다. 申請人의 仲裁申請이 相對方에게 通知된 날로부터 30日 以內에 當事者들이 單獨仲裁人을 合意하여 指名하지 못하는 때에는 裁判所가 任命한다. 紛爭이 3人의 仲裁人에게 부탁되는 경우에는 各 當事者는 仲裁申請書와 答辯書에서 각 1人씩 仲裁人을 指名하고 裁判所의 確認을 받아야 한다.

當事者의 一方이 仲裁人을 指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裁判所가 任命한다. 仲裁判定部의 議長이 任務를 맡은 第3의 仲裁人은 當事者들이 指名한 仲裁人들이 이를 合意하지 못하면 裁判所가 任命한다.

當事者들이 仲裁人의 數에 合意하지 아니한 경우 裁判所가 보기에 紛爭이 3인의 仲裁人을 要하는 性質의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裁判所는 單獨仲裁人을 任命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當事者들은 各各 15日의 기간을 가지고 仲裁人을 指名하여야 한다. 裁判所가 單獨仲裁人 또는 仲裁判定部의 議長을 任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ICC의 1個 國內委員會를 選定하여 그에게 指名을 要請하여야 한다. 單獨仲裁人 또는 仲裁判定部의 議長은 當事者들이 國籍을 갖고 있는 國家以外的 國家에서 選定되어야 한다.

當事者가 合議하여 仲裁人을 選定하지 못하는 경우 裁判所가 當事者를 대신하여 仲裁人을 任命하는 때는 裁判所는 그 當事者가 國籍을 가지는 國家의 國內委員會에 指名을 要請하여야 한다. 그러한 當事者의 國籍國家에 國內委員會가 없는 경우에는 裁判所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유로이 選定한다.

當事者中 一方이 仲裁人을 忌避하는 경우에는 裁判所는 忌避事由에 對한 유일한 判斷者이며 最終的決定을 내리게 된다. 仲裁人이 死亡하거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忌避申請 또는 다른 理由로 事後辭職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裁判所가 仲裁人의 의견을 察한 후 仲裁人이 이 規制에 따라서 또는 規定된 時限內에 職務를 遂行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決定한 경우, 裁判所는 이 仲裁人을 교체하여야 한다(第2條).

### 7.3.3. 仲裁의 管轄權

當事者들이 ICC에 仲裁를 탁하기로 合意한 경우에는 實상 이 規則에 의한 仲裁를 탁한 것으로 본다. 當事者一方이 仲裁合意의 存在 또는 效性에 關된 辯을 起하는 경우일지라도 裁判所가 그러한 合意가 面上으로 보아 일단 있었음을 確信하였을 때는 裁判所는 그 辯의 용여부나 是非에 關됨이 없이 仲裁의 進行을 定할 수 있다. 이런 경우 仲裁人의 管轄權

에 關한 定은 當該 仲裁人 自身이 취하여야 한다.

별도의 規定이 없는 한, 또한 仲裁人 自身이 仲裁合意의 效性을 認하는 한, 契約의 無效 또는 不存在 申請 등을 理由로 仲裁人은 管轄權을 喪失하지 않는다. 契約자체가 不存在 또는 無效인 경우에도 仲裁人은 當事者가 各各의 權利를 定하여 當事者들의 請求와 抗辯에 關하여 管轄權을 계속 行使하여야 한다.

提出書類가 仲裁人에게 送付되기 전이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後에라도 當事者는 임의로 임시적 또는 영구적 조치는 關한 法院에 탁할 수 있다. 이는 仲裁合意에 위반되지 않으며 仲裁人에게 부여된 該當 權限을 침해하는 것이 안된다. 法院이 취하는 어떠한 法의 적용이나 조치는 지체없이 裁判所의 事務局에 통지되어야 하며 事務局은 이것을 仲裁人에게 통지되어야 한다(第8條).

### 7.3.4. 仲裁節次

仲裁人은 가능한 한 최대한 速한 안에 모든 手단을 취하여 절차를 進行시켜야 한다. 중재인이 당사자를 심문함에 있어서 當事者들을 察시켜야 하며 만약 적법한 審問通知를 하였음에도 결석하는 당사자가 있으면 결석하에 仲裁節次를 進行하고 또한 他人에게 關하여 審問을 할 수 있다.

仲裁人을 1인이상의 감정인을 임명하여 심문 사항을 결정하여 준 후 이에 對한 감정인의 보고서 받고 또한 직접 그들을 審問할 수 있다. 仲裁人과 當事者의 同意없이 節次進行에 關된 되지 않은 사람의 參席을 許用할 수 없다.

### 7.3.5. 仲裁判定

仲裁人은 仲裁節次에 必要的 諸般書類에 署名한 날로부터 6個月 以內에 判定을 하여야 한다. 裁判所는 예외적인 경우나 仲裁人의 當한 要請 또는 裁判所 自體의 必要에 依하여 時限을 연장할 수 있다(第18條).

仲裁判定部가 3인의 仲裁人으로 構成된 경우에는 判定은 多數決에 依하여 意見이 對等한 때에는 議長 仲裁人이 내린다(第19條).

仲裁人은 部分的인든 最終的인든 判定文에 署名하기 前에 判定文 初案을 裁判所에 提出하여야 한다. 裁判所은 判定文의 書式에 따라 判定文 初案을 修正할 수 있으며 仲裁人의 決定에 影響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判定文의 要旨에 對하여 仲裁人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모든 判定文은 그 形式에 따라 裁判所가 승인하기 前에는 署名될 수 없다(第21條).

仲裁判定文은 仲裁節次가 進行된 場所에서 仲裁人이 署名한 日時에 作成된 것으로 본다(第22條). 仲裁判定은 最終的인 것으로 當事者는 어떤 形式의 提訴權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權限을 포기한 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어야만 한다. 따라서 判定의 上訴를 認定하고 있는 國家에서의 포기까지도 포함하기 爲하여는 仲裁合意의 內容이 가장 중요한 要件이 된다고 하겠다.

이 規則에 依하여 作成된 判定文은 裁判所에 보관된다.

## 8. 先進諸國의 建設工事仲裁制度

### 8.1. 美國篇

#### 8.1.1. 仲裁의 根據法

美國의 仲裁法은 英國法系의 所謂 코몬로우(Common law)에서 漸次로 制定法으로 옮겨가고 있다.

最初로 1920年, 뉴욕州仲裁法(New York Arbitration Act) 1925年에 合衆國仲裁法(United States Arbitration Act) 등이 制定되고, 이어서 各州의 仲裁法이 制定되었다.

이러한 各種仲裁法이 制定되기까지 그리고 仲裁法이 制定되어 있지 않은 州에서는 코몬로우가 仲裁의 根據法行勢를 했다고 본다. 合衆國仲裁法은 特히, 外國과의 通商과 海外業務에서 發生하는 紛爭에 關하여 聯邦裁判所에서의 仲裁契約의 強行과 仲裁判斷의 執行을 可能케 하는 規定을 設定해 놓고 있다. 또, 州의 仲裁法에 關하여는 統一法을 作成하는 움직임이 보이기 始作하여 統一州法委員全國會議(The National Conference of the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가 1955年 8月 20日, 統一仲裁法

(Uniform Arbitration Act)을 採擇하고, 同月 26日 美國辯護士協會代表者會議(The House of Delegates of the American Bar Association)가 承認하기에 이르렀다. 그 後, 이 統一仲裁法은 1956年 8월에 改正된 바 있다.

이 統一仲裁法은 俗稱이고, 正式으로는 仲裁에 關聯되고, 이에 關하여 法을 統一하는 法律(Act relating to arbitration and to make uniform the law with reference thereto)이라 稱하고 몇 個의 州에서 이것을 採用하고 있다. 1976年 1月 現在 近代의인 仲裁法을 갖고 있는 州는 加州를 包含해서 35個州에 이른다.

#### 8.1.2. 建設業仲裁規定의 발자취

民事紛爭에 關한 仲裁는 카문로우 或은 各州의 仲裁法에 따르게 된다. 그러나, 特히 建設業界에는 紛爭이 많고, 仲裁에 依해서 處理되는 경우가 많아졌기에 그 中에서도 建設工事紛爭을 處理하기 위한 特別한 規則이 必要하기에 이르렀다.

1966년까지 建設工事紛爭의 仲裁는 美國建築士協會標準約款(AIA)에 따라서 諸 各其 當事者가 1人式 仲裁人을 뽑아서 그 2人의 仲裁人이 세번째 仲裁人을 뽑거나, 或은 仲裁人全員을 商事規則(Commercial Rules)에 따라서 美國仲裁協會가 定하거나, 어느 方法에 따르든지 仲裁人을 定해 놓고 仲裁節次를 施行하여 왔다.

前者의 方法은 많은 不平等이 派生하여 紛爭이 길어지고 節次上 여러가지 問題를 發生케 하였다. 왜냐하면 紛爭當事者로부터 選定된 仲裁人은 많은 경우 非良心的이고, 仲裁에 關한 知識도 缺乏하여 實地로는 仲裁人이 1人만 남게 되어 困難한 일이 許多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엔지니어와 建築士로 構成되는 共同委員會가 建設業界에서의 仲裁에 關하여 綜合적으로 研究하여 建設業을 위한 特別한 統一的인 것을 作成함으로써 그 節次는 많이 改善된 것으로 結論짓게 되었다고 한다.

1965年 이 共同委員會는 擴大되어 美國콘설팅 엔지니어會議(A.C.E.C.), 美國建築士協會(A.I.A.) 綜合建設業協會(Associated General Contractors), 單種(專門)建設業協會(Associated Speciality Contractors). 全國專門技術士協會(Na-

tional Society of professional Engineers) 등이 합勢하여 1年間 研究後, 「建設業仲裁規定(Construction Industry Arbitration Rules)을 判定케 이르렀다.

그후, 美國土木學會(ASCE), 造景士協會(Associated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s), 美國下都給業者協會(A.S.A.), 建設示方書協會(Construction Specification Institute) 등도 이 規定을 쓰게되었다.

### 8.1.3. 仲裁節次

(ㄱ) 仲裁申請의 要件  
建設業仲裁規定(全文53條로 構成됨)에 따르는 仲裁을 받는때는 다음의 두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경우》當初의 都給契約 속에 다음과 같은 仲裁條項이 있는 경우 當然히 仲裁申請을 할 수가 있다.

(仲裁條項) 「本契約에서 생기거나 또는 本契約에 關係있는 論爭 또는 要求, 또는 契約의 不履行에 關하여는 美國仲裁協會의 建設業仲裁規定에 따르는 仲裁에 依해서 解決되는 것으로 한다. 또, 仲裁人에 依해서 이루어진 仲裁判定에 關한 裁判은 管轄을 갖게 되는 어떠한 裁判所에도 提起할 수가 있다」

《둘째 경우》 이와같은 條項이 없어도, 兩當事者間에 있어서 「建設業仲裁規程」에 따라서 仲裁趣旨의 合意 등을 記載한 署名文書를 提出함으로써 執行될 수 있다.

#### (ㄴ) 仲裁人의 選定

仲裁人候補者名簿에 記載되기 위해서는, 美國辯護士協會의 推薦이 있거나, 이미 美國仲裁協會의 名簿에 記載되어 있는 人士 중에서 推薦이 必要하고, 그 人士가 性格上 公平성이 어떠한지 同協會가 紛爭當事者인 경우에 그 人士를 仲裁人으로서 뽑을가의 그 與否 등을 基準으로서 定해진다. 仲裁申請이 接受되면은 同協會는 兩當事者에게 該當事件을 解決하는데 適應하는 仲裁人의 目錄을 送付한다.

複雜하고 紛爭額이 큰 事件에서는 仲裁人은 3人, 其他事件에서는 仲裁人은 1인이 뽑아진다.

3인의 仲裁人을 必要로 할 때에는 普通, 辯護士, 建築士와 都給者의 三個分野에서 諸 各其 7人程度 合計 20人 前後의 候補者가 提示되어 仲

裁人이 1人일 때에는 建設關係에 精通한 辯護士等 約 12人이 提示된다.

兩當事者는 7日以內에 希望하지 않는 者를 消去하고, 仲裁人으로서 希望하는 者에 順位를 매겨서 그 名簿를 同協會로 返送한다. 同協會는 返送된 名簿를 比較하여 兩當事者로부터 承認된 者 중에서 仲裁人을 選定한다.

兩當事者가 첫째번의 送付된 目錄中에서 承認된 者를 發見치 못하면 追加目錄이 送付된다. 萬一, 그래도 仲裁人에 關하여 當事者가 同意하지 못하면 同協會는 어느 當事者쪽에서도 消去되지 않는 者 중에서 指名할 수가 있다(建設業仲裁規定 第13條).

以上이 仲裁人選定上의 普通方法이고, 兩當事者가 合意에 依해서 仲裁人을 指名하거나, 또는 仲裁人을 指名하는 方法을 特定지우면 當然히 그것에 따르게 된다(建設業仲裁規定 第14條).

#### (ㄷ) 仲裁人의 報酬

當事者가 報酬의 支拂條件에 同意하지 않을 때에는 美國仲裁協會의 全國建設仲裁人名簿(The National Panel of Construction Arbitrators)에 記載된 會員은 當初 2日間分의 報酬를 받지 않고 職務를 遂行한다(建設業仲裁規定 第51條).

實地로, 美國仲裁協會의 仲裁人은 一般的으로 自發的인 公共奉仕로서 無償으로 業務를 遂行한다.

當初의 2日을 經過한 뒤에는 報酬의 支拂은 關係한 職務의 遂行量과 審理回數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適切한 日當額數 其他調整은 同協會管理者가 當事者와 仲裁人과 協議한 뒤에 이루어진다. 當事者가 報酬의 支拂條件에 同意하지 못할 경우에는 同協會가 適切한 額數를 定하고 文書로 當事者에게 傳達한다.

仲裁人의 報酬에 關하여 어떠한 調整도, 同協會를 통해서만이 成事되고, 仲裁人과 當事者間에 直接 이루어 지지는 못한다. 또, 該當事件을 仲裁하는 中立的인 仲裁人에 對한 報酬의 支拂條件은 다른 仲裁人에 對한 것과 同一한 것이어야 한다(建·仲 第51條).

#### (ㄹ) 審理

仲裁契約에 다른 規定이 없는 限, 仲裁人은 審理의 日時와 場所를 指定하고, 審理日의 5日前

까지 當事者에게 通知하지 않으면 안된다.

仲裁人은 審理通知를 받은 當事者가 出席치 않아도 提出된 證據에 따라서 紛爭審理를 하고, 決定을 내릴 수가 있다. 裁判所는 當事者의 申告에 따라서 仲裁人에게 迅速하게 紛爭審理를 하고, 決定하도록 指示할 수가 있다[統一仲裁法 第5條(a)].

當事者는 審理를 받고, 紛爭에 關한 證據를 提出하여 審理에 出頭한 證人은 反對審問할 權利를 갖는다[統一仲裁法 第5條(b)].

審理는 모든 仲裁人이 하고 質問의 決定이나, 最終仲裁判定을 내리는 것은 多數決로서 한다[統一仲裁法 第5條(c)].

仲裁人은 證人의 出席과 帳簿, 記錄, 文書 其他의 證據物提出을 要求하기 위한 召換令狀(Subpoenas)을 發行할 수 있고, 宣誓(oath)를 取扱할 수가 있다[統一仲裁法 第7條(a)].

仲裁人은 當事者의 申告에 따라서 證據로서 使用키 위해, 召換令狀을 낼 수 없고, 또 審理에 出頭할 수 없는 證人으로부터 證言錄書(deposition)를 取할 수가 있다[統一仲裁法 第7條(b)].

法律에 따라서 證人 或은 文書を 召換할 權限을 付與받은 仲裁人은 한쪽 當事者의 要求에 依해서 或은 獨自的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 仲裁人은 提出된 證據物을 證認하는가 그 與否를 判斷하지 않으면 안되나 嚴密하게 證據法(legal rules of evidence)에 따르지 않아도 좋다(建仲 第31條).

이와같이 仲裁의 審理는 裁判所에서의 尋問보다 形式的이 아니다. 仲裁人은 證據法에 따른 必要는 없고, 오히려, 關係된 重要한 모든 證據에 關해서 聽問할 權限이 있다. 仲裁人은 때로는 裁判所에서 許諾치 않는 것과 같은 證據를 採는 수가 있다.

仲裁人은 裁判官보다 積極的인 役割을 遂行하고, 兩當事者에게 積極的으로 質問을 한다. 또, 仲裁人이 3人的인 경우에는 辯護士가 首席役割을 하는 것이 慣例로 되어 있다.

各當事者는 辯護士를 代理人으로 하는 權利가 있고(統一仲裁法 第6條), 審理는 事業的인 方法으로 遂行한다.

迅速한 解決을 위해 仲裁人도, 事務局도 많이 努力하고 繼續된 集中審理로서 兩當事者로부터의 事情說明은 迅速하고 詳細히 遂行된다. 審理는 非公開이며, 仲裁人은 審理參加者를 制限할 수가 있다.

#### (口) 仲裁判定

仲裁判定은 書面으로, 1人的인 仲裁人 或은 複數의 仲裁人이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多數人에 依한 署名이 되어야 한다. 仲裁人은 各當事者에 1部式, 登記郵便等에 依해 仲裁判定(書)를 送付한다(建設業仲裁規定 第42條와 統一仲裁法 第8條).

仲裁判定은 仲裁人에 依해서 迅速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當事者에 依한 別途로 된 合意 或은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審理終了日, 또는 口頭辯論이 拋棄되었을 경우에는 最終陳述과 最終證據를 仲裁人에게 送付日로부터 늦어도 30以內에 하여야 한다(建設業仲裁規定 第41條).

當事者가 仲裁節次中에 그 紛爭을 解決할 때에는 仲裁人은 當事者의 要求에 따라 合意된 解決策은 仲裁判斷에 쓸 수가 있다(建設業仲裁規定 第44條).

그러나 統一仲裁法이나 建設業仲裁規定도 仲裁判定에 理由를 부치는 것을 要求치 않고 있고, 仲裁判定에 理由가 써있지 않아도, 仲裁判定의 取消事由로는 되지 않는다.

實地로, 建設工事紛爭에 關한 仲裁判斷은 理由를 부치지 않는 것이 많다. 그러나, 當事者에게 說明하기 위해 理由를 記述한 書信을 美國仲裁協會를 通해서 當事者에게 넘겨주는 수도 있다.

仲裁人의 判定基準은 常識, 正義, 衡平이라는 데서 嚴格하게 法律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仲裁人이 반듯이 法律家에만 限定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點에 關하여는 異論이 없는 것도 아니다.

仲裁判定의 變更은 ① 仲裁判定에 明白한 數字上의 誤算 或은 人的 物的 또는 財産에 關해 誤記가 있을 때, ② 仲裁判定이 不完全하고 形式的으로 되었을 때, ③ 仲裁判定을 明確하게 할 때, 等에 認定된다(統一仲裁法 第9條).

한쪽 當事者의 申告에 따라 裁判所는 仲裁判

斷을 取消하고, 또는 修正할 理由가 主張되지 않는 限, 仲裁判定은 確證하여야 한다(統一仲裁法 第11條).

다음 같은 경우에 仲裁判定은 裁判所에 依해서 取消된다.

① 仲裁判定이 買收, 詐欺 其他不正手段으로 取해졌을 때.

② 中立者로서 任命된 仲裁人에 偏見이 있을 때 또는 仲裁人에 汚職 或은 當事者에게 不利와 不正行爲가 있었을 때

③ 仲裁人이 越權行爲를 했을 때

④ 仲裁人이 充分한 理由가 證明되어도 審理를 延期하지 않았을 때, 또는 紛爭에 實質的 關係가 있는 證據資料를 審理하지 않았을 때 或은 當事者의 한 쪽에 實地的 不利를 주는 것과 같은 方法으로 審理를 했을 때

⑤ 仲裁契約이 없고 仲裁事項이 統一仲裁法 第2條(仲裁의 强制 或은 中止에 關한 節次)에 따라서 節次上 不利하게 決定되지 않고, 當事者가 異議를 提起하는 일없이 仲裁審理에 參加하지 않았을 때, 그러라, 仲裁人이 付與한 救濟가 法律 或은 衡平에 依한 裁判所라면은 付與치 않는 것과 같은 事實은 仲裁判定을 取消하거나, 確證을 拒否할 理由로 되지 않는다(統一仲裁法 第12條).

仲裁判定의 修正(Modification) 또는 訂正(Correction)은 仲裁判斷이 當事者에게 넘겨져서 90日 以內에 申告가 있을 때 裁判所는 다음과 같은 경우 執行한다(統一仲裁法 第13條).

① 仲裁判定에 明白한 數字의 誤算 或은, 人的, 物的 또는 財産上의 誤記가 있을 때

② 仲裁人이 自己들에게 委託되지 않은 事項에 關하여 仲裁判定을 했을 때

③ 仲裁判定이 形式上 不完全하였을 때

仲裁判定을 確證하고, 修正하거나 訂正하는 命令이 내려지면 그것에 따라서 判決이 내려지고 其他의 判決과 같이 强制執行된다(統一仲裁法 第14條).

## 8.2. 英國篇

### 8.2.1. 仲裁에 關聯된 機關

建設工事紛爭 其他民事紛爭處理에 關聯된 機關

은 許多하고, 建設工事紛爭에 關하여 仲裁人 名簿의 備置, 仲裁人의 選定, 仲裁節次 細則의 制定 等 仲裁에 關聯된 일을 하는 機關은 主로 다음과 같다.

① 英國王立建築士協會(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RIBA) ※1834年 設立됨.

② 土木技師協會(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 ICE)

③ 構造技師協會(Institute of structural Engineers: ISE)

④ 王立公認積算士協會(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s: RICS)

⑤ 仲裁人協會(Institute of Arbitrators) ※1914年 設立됨.

⑥ 런던仲裁裁判所(London Court of Arbitration) ※ 런던 仲裁裁判所를 管理하는 共同委員會의 構成은 (i) 런던市地方公共團體代表 (ii) 런던商工會議所代表 (iii) 仲裁人協會代表 등으로 된 私的機關이다.

⑦ 全國住宅建築家會(National House Building Council)

#### 8.2.2. 紛爭處理節次와 그 根據

##### ( ) 仲裁法

私的紛爭을 任意로 處理하는 데는 紛爭當事者의 意思가 根據로 되므로 當初의 都給契約 속에 어떻게 紛爭處理方法이 定해져 있는가가 極히 重要하게 된다. 그러나, 當初의 都給契約 속에 仲裁條項이 있는가 또는 없어도 兩當事者가 仲裁에 依해서 解決할 趣旨의 合意를 했을 경우에는 그 仲裁은 1950年과 1975年 仲裁法에 따라서 執行되어야 한다.

英國의 경우는 美國처럼 建設關係紛爭處理를 위한 統一의인 規定은 없으나, 前述한 各仲裁機關 속에는 獨自의인 規定을 만들어서 그것에 따라 仲裁節次를 取하는 곳도 있다.

基本的으로는 1950年과 1975年 仲裁法에 根據法이 있으나, 紛爭處理方法도 詳細한 仲裁節次도 當初의 都給契約書 속에 어떻게 紛爭處理條項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決定된다고 한다(當初契約 속에 定해져 있지 않으면 兩當事者의 協議等으로 決定된다). 그래서 代表的인 都給契約等 속에서의 紛爭處理에 關한 規定等에 關하여 살

여보자.

(ㄴ) 各種契約에 따르는 紛爭處理

① RIBA 約款에 의한 紛爭處理概要

RIBA 約款 第35條(仲裁)에 依하면 發注者 또는 發注者代理인 建築士와 都給者間에 紛爭이 生길 때에는 그것은 當事者가 合意한 者의 仲裁와 그 最終的決定에 이르도록 하고, 當事者의 한쪽이 다른 側에 對하여, 仲裁人의 任命同意를 求하는 書面을 주고 14日以內에 合意치 못했을 때에는 當事者 한쪽의 要求가 있으면 當分間 RIBA의 會長 或은 副會長에 依해서 任命된 者의 仲裁와 最終的決定이 내려진다(第1項).

仲裁節次는 原則上, 發注者 또는 發注者 代理인 建築士와 都給者의 書面に 依한 承諾이 없으면 工事의 實地的完工, 工事의 拋棄等의 以後까지는 開始되지 않는다(第2項).

仲裁人의 仲裁判定은 最終的이고, 當事者를 拘束한다(第4項).

② ICE 約款에 의한 紛爭處理概要

ICE 約款에 依한 紛爭處理方法은 他約款과 若干 다르다.

發注者와 都給者間에서 土木技師의 決定等에 關한 紛爭을 包含해서 契約에 關聯된 紛爭이 生겼을 때에는 우선 그 土木技師에게 委託되어 土木技師가 自己의 決定은 書面으로 記述하여 그것을 兩當事者에게 通知한다.

原則으로, 都給者는 工事中이던 土木技師의 決定에 따라서 工事を 續行한다. 萬一, 土木技師가 決定을 要求한지 3個月이 지나도 決定을 내리지 않거나, 當事者가 그 決定에 不服일 때에는 그 決定通知受領後 3個月以內(決定이 없으면 3個月 期間終了後 3個月 以內에 仲裁에 回付한다

仲裁人의 指名에 關하여, 1個月 以內에 合意치 못할 경우에는 ICE 會長 或은 副會長이 指名한다 이 仲裁는 ICE의 仲裁節次(1973)에 따라서 實施된다.

③ 公共約款(Form G C/Wor ks/1)에 依한 紛爭處理의 概要

이 約款의 第51條(公正한 賃金) 等에 關한 紛爭을 除外하고, 이 契約에 關聯된 모든 紛爭等은 한쪽 當事者가 他當事者에게 通知後, 1人의

仲裁人의 仲裁에 부친다.

仲裁人의 指名에 關하여 合意가 되지 않을 때에는 指定機關(法律協會, RIBA, RICS, ICE, 機械技師協會等) 中에서 그 件에 關한 決定權者(Authority)가 뽑은 機關長이 指名하는 仲裁人에 委託된다(公共約款 第61條).

④ 런던仲裁裁判所의 仲裁條項

런던仲裁裁判所는 다음과 같은 仲裁條項을 契約書에 插入하거나, 紛爭에 關하여 兩當事者가 같은 合意를 하도록 勸誘하고 있다. 『이 契約의 有效性, 解釋과 實施는 英國法律에 따라 支配되어야 하고, 이 契約에서 發生하거나 또는 關聯된 어떠한 紛爭도 그 時點에서 「런던仲裁裁判所規定」에 따라서 仲裁에 依해 決定되어야 한다. 兩當事者는 이 仲裁에 關聯된 어떠한 通知도 이 契約 或은 當事者로부터, 그後 變換한 것을 나타내는 書面)에 적힌 住所에 送付하면 有效하고 充分한 것으로 合意한다』

이와같은 仲裁條項을 包含하는 契約에 關聯해서 紛爭이 생기면 「런던仲裁裁判所規定」에 따라서 仲裁로서 解決된다.

⑤ 發注者와 建築士間의 紛爭處理

發注者와 建築士間의 契約은 發注者와 都給者間의 契約과 別途契約으로 되어있으나, 그 中에는 仲裁條項이 含有되어 있다.

發注者와 建築士間의 紛爭은 거의 RIBA에서 處理되나 最近에는 RIBA 會長은 調停을 하도록 勸誘하기에 이르렀다.

이 調停에 關한 內部規則(RIBA 內의)은 備置되어 있다.

(ㄷ) 仲裁節次

① 仲裁人의 選定

仲裁契約이 있으면 別途로 特約이 없는限, 仲裁人은 1人으로서의 條項이 含有된 것으로 보게(1950年 仲裁法 第6條)되므로 仲裁人은 原則으로 1人이다.

實地로, 建設工事紛爭에 關하여는 1人의 仲裁人이 慣例로 되어있고(海事紛爭時에는 3人의 仲裁人이 慣習으로 되어 있다), 그 仲裁人은 辯護士가 아니더라도 敎育, 訓練等에 依해서 仲裁等에 關한 法令의 知識이 있으면 된다.

仲裁契約속에 仲裁人을 2人이라 定해 있을 때



에는 別途로 特約이 없는限, 當事者 제각기 1人의 仲裁人을 뽑고 그 2人의 仲裁人이 審判人을 指名한다는 趣旨의 條項이 包含된 것으로 본다(1950年 仲裁法 第7條와 第8條).

仲裁契約 속에 3人의 仲裁人兩當事者로부터 1人式 選定하고, 第3의 仲裁人은 兩當事者로부터 指名된 仲裁人이 指名한다)에 委託하는 趣旨의 條項이 있으면 兩當事者로부터 指名된 仲裁人이 指名하는 仲裁人은 單純한 세번째 仲裁人이 아니고, 審判人을 指命한 것과 같은 效果가 주어진다(1950年 仲裁法 第9條).

實地로 仲裁人을 누가, 어떻게 뽑는가에 關하여는 兩當事者間에 締結된 仲裁契約(都給契約中の 仲裁條項包含한다)의 內容에 따라 다르나, 當事者間에 特約이 없는 限, 런던仲裁裁判所는 普通「仲裁人協會의 仲裁人名簿속에서 1人의 仲裁人을 指名하나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 ② 仲裁人의 權限과 義務

仲裁人은 全當事者 出席下에 當事者가 提示한 書面에 依한 證據를 檢證하고, 口頭에 依한 證據나 主張을 聽取하지 않으면 안된다(런던仲裁裁判所規定 第11條).

仲裁人은 모든 當事者가 別途의 合意를 하지 않는限 모든 當事者와 證人에 對하여 宣誓 或은 誓約한 뒤(on oath or affirmation), 그 證據를 提示할 것을 要求하지 않으면 안된다(런던仲裁裁判所規定 第13條, 1950年 仲裁法 第12條 第1項).

仲裁人은 한쪽 當事者 또는 證人이 口述書(affidavit)에 依한 證據를 提出하도록 指導하고 그 當事者 또는 證人이 反對審問(cross-examination) 때문에 自己面前에 出席하도록 指導한다. 이 出席을 履行치 않았을 경우에는 그 證據를 認定해서는 안된다(런던仲裁裁判所規定 第13條 第2項).

그러나, 建設工事紛爭內容에 關한 判斷은 技術的인 것이므로 仲裁人은 嚴格히 證據法(technical rules of evidence)에 따르지 않아도 좋고, 보다 큰 自由가 있고, 裁判所에서 採擇되지 못하는 證據도 仲裁人은 採擇할 수가 있다.

#### ③ 審理前의 節次

仲裁節次가 始作하면은 그 節次는 一般 裁判所와 같은 方法으로 한다.

順序에 따르면 爲先 仲裁를 求하는 當事者로부터 書計官에게 所定の 內容申請書가 手數料를 부쳐서 提出된다.

仲裁申請書가 提出되면은 書記官은 相對側에게 그 趣旨를 알리고 一定期間內에 答辯書의 提出를 要求한다.

이것이 끝나면 仲裁人의 指名이 되고, 指名된 仲裁人이 이것을 받으면 兩當事者에게 書面으로 仲裁人의 指名이 알려진다.

仲裁人은 指名되자마자 될 수 있는限 빨리 仲裁를 遂行시킨다.

仲裁人은 進行에 關한 指針을 定하고, 兩當事者가 同意하면 이것에 따라 進行시킨다(當事者로부터 準備節次의 要求가 있으면 準備節次를 한다).

#### ④ 審理

仲裁人이 審理를 위한 日時, 場所를 定하고, 書記官이 兩當事者에게 通知한다(RIBA에서는 日時, 場所에 關해 當事者의 希望을 듣는다).

審理는 結論이 나기까지 原則으로 每日 繼續된다. 普通, 審理는 1日 乃至 數週間 계속되는 것이 常例이나, 1~2週間에 解決짓는다.

審理는 非公開로서, 當事者, 그 代理人, 證人 書記官 等 以外는 仲裁人의 許可가 없으면 누구도 出席할 수가 없다.

建設工事中の 紛爭에 關하여는 都給契約中에 即時仲裁條項이 놓여있는 경우가 있으나, 그 경우에는 建築士의 指示를 求하나, 都給者側에서 그 指示에 不滿이 있으면 RIBA의 會長에게 連絡하여 仲裁人을 指名하여 받고, 即時, 現場에 出頭하여(그 날中 或은 翌日) 口頭로 決定을 내릴 수가 있다.

어느것이나 英國에서의 仲裁는 빠르고, 普通, 1일에 審理를 끝내고, 1週間以內에 書面으로 仲裁判定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 ⑤ 仲裁判定

仲裁人은 審理가 끝나면 될 수 있는 限 빨리 書面으로 仲裁判定을 쓰고 런던裁判所に 送付하여 書記官은 即時 當事者에게 對하여 受理할 수 있는 趣旨를 알린다(런던 仲裁裁判所 規定 第29

條).

仲裁判定의 理由를 쓸 義務는 없다(ICE의 仲裁節次(1973年) 第11條에서는 理由를 쓰지 않도록 되어있다).

付屬書類에 理由를 쓰는 수도 있으나, 仲裁判定의 一部가 아니므로 裁判所에 訴追할 對象이 되지 않는다.

모든 仲裁契約은 特約이 없는 限 仲裁人이 必要하다고 생각하면 假仲裁判定(Interim award)을 낼 수 있다는 趣旨의 條項이 含有된 것으로 본다(1950年 仲裁法 第14條).

仲裁判定은 最終的인 것이다. 그러나, 다음 세가지 경우에는 一般裁判所에 訴訟을 提起할 수가 있다(1950年 仲裁法 第23條 第2項).

(i) 仲裁人이 한쪽 當事者와 利害關係가 있는 경우 등 不實한 措置를 했을 때.

(ii) 仲裁人이 有效한 證據를 受理하지 않았던 것 등 節次上의 瑕疵를 했을 때.

(iii) 仲裁人이 裁判上의 先例를 違反하는 것 등의 法的錯誤를 犯하였을 때.

一般裁判所는 訴訟을 받으면 普通은 仲裁人의 出席을 要求하여 答辯을 求한다. 仲裁判定 속에 明確한 錯誤, 例컨대 支拂時期, 利子計算 等に 關한 錯誤가 있으면 一般裁判所는 仲裁人에 仲裁判定의 變更을 求한다.

仲裁契約에 따르는 仲裁判定은 一般裁判所 또는 그 裁判官의 許可를 얻어서 같은 趣旨의 判決 또는 命令과 같은 方法으로 執行할 수가 있다. 이 評價를 付與했을 때에는 仲裁判定의 語句를 判決로서 登錄할 수가 있다(1950年 仲裁法 第26條). <다음호 계속>

## 寄稿歡迎

本誌의 內容을 더욱 充實하게 하기 爲하여 會員들이 相互理解할 수 있는 揭載內容으로써 研究論文, 技術解說, 隨筆, 紀行文, 社會相 또는 見聞記, 生活科學技術, 感想文, 其他經濟에 關한 原稿를 다음과 같이 寄稿하여 주시기를 付託합니다.

- 1) 投稿는 200字 原稿紙를 반드시 使用하고 題目과 姓名은 國漢文 및 英文으로 記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2) 研究論文은 반드시 英文 Abstract를 添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英文의 論文도 可합니다. 또한 圖表 및 圖面은 英文으로 表示하여 주십시오.
- 3) 筆者의 寫眞一枚와 本文 記事와 關係있는 寫眞 및 圖解를 添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4) 採擇된 原稿에 對해서는 所定의 稿料를 드립니다.
- 5) 提出期間: 隨時
- 6) 보내실곳: 韓國 技術士會 事務局(編輯室)

서울特別市 江南區 驛三洞 635-4

과학기술회관 401호

電話 566-5875

557-1352